

2025년도 경기도 스타기업 육성 사업 참여 기업 모집 공고

경기도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도내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수요 맞춤형 집중지원을 통한 강소기업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2025년 경기도 스타기업 육성 사업'을 시행하오니 역량 있는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5년 2월 26일

경기도지사

1 개 요

- 사업목적: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술혁신·수출주도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사업화 지원을 통해 강소기업으로 육성 도모
- 지원대상: 도내 중소기업 47개 사 내외
- 사업기간: 2025년 1월 ~ 11월
※ 신청한 사업과제는 2025년 10월 31일까지 완료되어야 함.
- 지원내용
 - 총비용의 최대 70%(지원금 한도 내 전액 선지급)
 - 사업 참여 시·군(용인, 화성, 성남, 부천, 평택, 시흥, 파주, 이천, 안성, 여주, 과천) 소재 기업은 기업당 76백만원 이내 지원(도비 + 시군비)
 - 이외 시·군 소재 기업은 기업당 38백만원 이내 지원(도비)
 - 지원절차: 기업 선정 → 협약체결 → 지원금 선지급 → 과제 중간 점검 → 과제 완료 및 지원금 정산 → 정산 잔액 반납

○ 세부 지원 내용

지원 분야	세부 분야	내용
제품 혁신	시제품개발	시제품(금형, 워킹목업 등) 개발 지원
	디자인개발	제품, 시각/포장, 통합 디자인 개발 지원
	지식재산권 획득	해외특허(PCT포함), 국내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제품규격인증획득	국내외 신규 제품규격인증 지원
	기술사업화	1. 시장정보분석 : 특허 동향, 시장 현황 등 2. 기술사업화자율과제 : 보유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개선, 개량 활동 3. 기술사업화컨설팅 :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 전문가 컨설팅 비용
시장 개척	홍보판로개척	기업 및 제품 홍보 동영상, 홈페이지, 홍보 인쇄물(브로셔, 카탈로그 등), 포스터, 이북(e-book) 등
	국내외전시회참가	국내외 전시회 참가 비용 지원
스마트 혁신	스마트 공정개선	공정개선, 자동화설비도입, 소프트웨어(시스템) 구축, 검증, 컨설팅 등
	온택트 홍보판로	배너, CPC, 인플루언서광고, 플랫폼 입점 등
	디지털 전환	진단, 시스템 및 플랫폼 구축, 데이터 분석비 등

- 선정기업 대상 수요 조사를 통해 **언론홍보 추가 지원**
(기획보도, 카드뉴스, 지면광고 등)
- 공고문 붙임문서 ‘운영지침’ 참고
- 사업 신청 시 제출한 추진계획서 신청과제 개요 및 예산사용계획에 제출된 세부 과제(예, 전시회참가 지원, 제품규격인증 등)에 대해 '25년 1월 ~ 협약일까지 진행된 건은 **소급 신청 가능**
- 지원금 한도 내 **지원 분야의 제한 없이 세부 추진 과제 신청 가능**
ex) A 기업 : 시제품 2건, 지식재산권 획득 2건, 국내외전시회참가 1건
B 기업 : 국내외전시회참가 3건, 지식재산권 획득 2건, 제품규격인증 1건

○ 기타 혜택 : 스타기업 선정 시 **글로벌 강소기업 1,000+(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 강소, 강소+” 단계로 신청 시 가점 부여

2 신청자격 및 방법

- 아래의 ‘필수조건’ 모두와 ‘선택조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유형	자 격 조 건
필수조건 (①~③) 모두 충족	①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경기도 내 ‘주사무소’ 또는 ‘등록공장’([참고1]) 설치 · 운영 ② 경기도 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설치 · 운영 ([참고1]) ③ '23년 매출액 50억원 이상 700억원 미만 중소기업(지식서비스기업*은 20억원 이상 700억원 미만) ※ 지식서비스기업 - 산업기술분류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대분류 ‘지식서비스’ 업종 기업으로서 사업자등록증에 해당 종목이 있으며, 그 종목이 주된업종인 경우 반영 가능. - 주된업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참조
and	
선택조건 (①~④중 1개 이상 충족) ([참고 2])	① '23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3% 이상 ② '23년 매출액 대비 수출액 30% 이상 ③ 최근 2년간('22년~'23년) 매출액 증가율 7% 이상 ④ 최근 2년간('23년~'24년) 채용인원 3명 이상 ※ ③, ④는 2025년에 모집에 한하여 선택 조건 조정

- 신청 제외대상 : 2011년~2024년 스타기업 육성사업 선정 기업,
 2016년~2022년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선정 기업
 2023년~2024년 글로벌강소기업 1,000+,
 월드클래스 300, 월드클래스플러스 선정 기업
- 중복지원 제한 사업 : 동일 연도(2025년)에 글로벌 강소기업, 소부장 기업 육성 지원사업, 비즈니스 융합성장 지원사업 중복지원 불가
 ※ 위 사업 중 중복 선정 시 1개 지원사업 선택 必

[참고1] 등록공장 및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기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공장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2868호)」 제16조 및 제17조 규정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참고2] 선택조건 확인(증빙)자료

항목	확인(증빙) 자료
연구 개발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회계기준서(K-IFRS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된 금액 * 2025 스타기업육성사업 신청서 작성요령 참조
수출액 비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실적은 직수출과 기타수출로 구분 * 직수출실적은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www.bandtrass.or.kr) 발급자료에 의하여 확인·증명 * KTNET(www.ktnet.com) 발행본
고용 증가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년 12월, '24년 12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귀속연월 12월 신고분) * 상시근로자 : 연도별 <u>귀속연월 12월분 간이세액 인원</u>을 기준으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제외 ·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등기된 이사는 제외 예) '23년 12월 기준 A 기업의 근로자 수가 50명이었으나 '24년 12월에 4명이 퇴사하고 4명이 입사한 경우 고용증가율은 0명 임. '23년 12월 근로자 수(50명) 기준 ±로 증가율 파악 * 홈택스 (www.hometax.go.kr)에서 발급 가능.

□ 신청방법: 경기 기업비서 이지비즈 홈페이지(www.egbiz.or.kr) 신청

- ① 기업회원으로 가입/로그인
- ② 마이페이지 클릭 ⇒ 나의 서류함 클릭 ⇒ 공고문 5페이지의 제출 서류를 확인 후 등록하기 클릭 ⇒ 문서명(파일명) 작성 및 등록
 ※ 나의 서류함에 문서를 등록하시면 계속하여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③ (상단 좌측) egbiz 초기화면에서 ⇒ 검색 창에 “스타기업” 검색 ⇒ “2025년 스타기업 육성사업 참여기업 모집” 사업명 클릭 ⇒ (하단) 지원사업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 제출 파일 업로드
- ④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참여사업 클릭하여 신청현황 확인

□ 신청기간 : 2025. 2. 26.(수) ~ 2025. 3. 20.(목) 18시까지

- * 외부기관 발급 서류는 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 원칙
- * 사전 등록 요망(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한 지연, 장애 발생 가능)
-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 (서식은 첨부파일 > 붙임 3. 2025년_스타기업_육성사업_신청서식.hwp 파일에 있습니다)

구분	제출서류
필수 제출	① [서식 제1호] 참여신청서(1페이지) 및 추진계획서 한글파일 1부 및 직인 날인된 스캔본(PDF) 1부
	② [서식 제3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서식 제4호] 지원요건 준수 확인서 1부
	③ [서식 제5호] 범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서식 제6호] 범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약약서 1부
	④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6개월 이내) * 국세청 홈택스 (http://www.hometax.go.kr) > 즉시발급 증명 > 사업자등록증명
	⑤ 법인등기부등본 1부(3개월 이내)
	⑥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인증서 사본 1부(6개월 이내)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소 관리시스템 : www.rnd.or.kr / 문의처 : (국번없이) 1379
	⑦ `21년~`23년 확정재무제표(재무제표증명원) 각 1부 * 홈택스(www.hometax.go.kr)
	⑧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23년 12월, `24년 12월 귀속분, 국세청 신고본) 각 1부 * 종사자수는 각 연도 12월 귀속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명기된 간이세액 인원만 인정 * 홈택스(www.hometax.go.kr) > My홈택스 > 세금신고내역 > 원천세
	⑨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국 세 : 국세청 홈택스 (http://www.hometax.go.kr) > 민원증명 > 납세증명서 * 지방세 : 민원24 (http://www.minwon.go.kr) > 민원신청 > 지방세납세증명
	⑩ 산업재해를 확인서 1부 (최근 1년 조회)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http://certi.kosha.or.kr) / 문의처 : 1644-4544
	⑪ 공장등록증명서(필수조건에 <u>경기도 내 공장이 있는 기업의 경우 제출</u>) 1부 * 필수조건 중, 경기도 내 '주사무소' 또는 '등록공장' 설치·운영 * 정부24(https://www.gov.kr/portal) 발급(6개월 이내)
	⑫ 지식서비스 기업 증빙서류(해당 업종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 세무계산서 합계표 상세조회(홈택스) 엑셀 다운로드 제출(2023년) * 국세청 홈택스 (http://www.hometax.go.kr) > 전자세무계산서 조회 > 합계표.통계조회 > 합계표 조회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 등 중 평균매출액 등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본다

선택 제출	<p>⑬ 신청자격 중 선택조건(1개 이상 충족)에 해당하는 증빙자료 각 1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3% 이상 : 제출불필요 * '23년 매출액 대비 수출액 30% 이상 - 직수출 실적은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및 한국무역통계진흥원(www.trass.or.kr) 발급자료에 의하여 확인·증명 -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에 의한 수출은 주거래 외국환은행장이 발행한 증명서로 확인 * 최근 2년간('22년~'23년) 매출액 증가율 7% 이상 : 제출불필요 * 최근 2년간('23년~'24년) 채용인원 3명 이상 : 제출불필요
	<p>⑭ 가산점 획득에 필요한 증빙서류 사본(해당 시) 각 1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규격인증, NET/NEP 인증,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 경기도 일자리우수기업, 경기도 창업사업(졸업)기업,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기술닥터사업 참여기업,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 여성기업 인증, 친환경인증,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장애인기업 확인서, 경기도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소재·부품 전문기업 확인서, 경기도 면접수당 지급 기업 인증서, 경기도 유망환경기업 지정서, 경기도 ESG 진단평가 평가서, 경기도 산업단지 RE100 참여 확인서

3 신청 및 선정제외 대상

- 공고일 기준, 신청기업 또는 대표가 **아래 사항에 해당 시 선정 대상에서 제외**
- ①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서류가 허위인 경우 및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②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 체납기업
 - ③ 자본잠식 및 금융불량 거래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규제 중인 기업
 - ④ 휴·폐업 중인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⑤ 법정관리 또는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⑥ 최근 2년간(22년 ~ 23년) 연속하여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500% 이상이거나 유동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 * 부채비율 = (부채총계/자기자본) × 100
 - ** 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 × 100
 - ⑦ 결산 기준 자본을 완전히 잠식한 경우

⑧ 대기업 · 중견기업

⑨ 2011년~2024년 스타기업 육성사업 선정 기업

* 2017년까지의 사업명: 스타기업육성프로젝트, G-STAR기업육성프로젝트

⑩ 공고일 현재 신청기업이나 신청기업의 대표가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 제한 등의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⑪ 국가 ·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참여 제한을 받고 있거나 동일한 사항으로 타 사업에 참여(과제 진행) 중인 기업

⑫ 월드클래스플러스, 월드클래스 300, 2016년 ~ 2023년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선정 기업, 2023년 ~ 2024년 글로벌 강소기업 1,000+ 선정 기업

* 2023년의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사업 사업명 :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 강소기업 1,000+ “글로벌 강소” 트랙

* 같은 해에 글로벌 강소기업, 소부장 기업육성 지원사업, 비즈니스 융합성장 지원사업은 중복지원 불가로 2025년도에 중복 선정되었을 경우 스타기업이나 글로벌 강소기업 중 택1必

※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의한 일시적 재무 악화 기업의 경우 ⑦, ⑧ 항목에 해당하더라도 예외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등)를 제출해야 함.

4 평가내용 및 절차

□ 평가단계: 요건심사 → 서류심사 → 발표평가

※ 최종점수 = 서류평가(40점) + 발표평가(60점) + 가산점(10점)

① 요건심사: 신청 자격 조건 충족 여부, 제외 대상 및 제출 서류 확인

② 서류평가: 기업 역량(재무 상태, 일자리 창출 등)

구 분	계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윤리경영 (산업재해율)	고용창출
배 점	40점	10점	5점	10점	5점	10점

- 재무상태는 최근 3개년도('21년~'23년) 재무제표 기준으로 평가

- 서류평가(40점) 및 가산점(10점) 합산 결과 선정규모 2배수 이내 발표평가 상정

③ 가산점 별도 부여(최대 10점)

[참고 4] 가산점 적용 기준 및 대상

- 인증서, 지정서 등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한 해 인정
- 가산점 적용대상(각 1점)

- NET / NEP 인증기업 (인증서)
- 국내·외 규격인증(UL, CCC 등 인증별 1점, 최대 3점) 보유기업 (인증서)
-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선정기업 (인증서)
- 경기도 일자리우수기업 인증기업 (인증서)
- 경기도 창업사업 졸업기업 (확인서)
-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운영) 입주기업 (확인서)
- 경기테크노파크 기술닥터사업 참여기업(중기애로과제 기업에 한함) (참여확인서)
-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 (참여확인서, 협약서)
- 여성기업 인증기업 (인증서)
- 친환경인증 기업 (인증서)
- 경기도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성과공유제 종합관리시스템 www.benis.or.kr 에서 발급)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이사장 또는 성과공유제 확산추진본부의 장으로부터 과제확인서 발급
- 장애인 기업 (확인서)
- 경기도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기업 인증 (인증서)
- 소재·부품전문기업 확인서 보유기업 (확인서), (소재부품종합정보망 www.mctnet.org 에서 발급)
- 경기도 면접수당 지급 기업 (인증서)
- 경기도 유망환경기업 (지정서)
- 경기도 ESG 진단평가 기업 (평가서)
- 경기도 산업단지 RE100 참여기업 (확인서)

④ 발표평가: 기업 성장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대면·발표평가

구분	세부항목	평가기준	배점
계획의 적정성	명확성, 구체성	사업목표의 부합성, 목표의 명확성, 시장 및 특허조사 등 준비의 충실성, 사업기간 내 완료 가능성, 제품 콘셉트 및 설계의 완성 정도, 과제계획 및 일정의 실현 가능성	15점
기술성	핵심기술 기술개발기반	기술개발실적, 핵심기술의 우위성(차별성), 기술의 응용 및 확장 가능성, 4차 산업 기술·제품, 기술개발, 기술개발인력	15점
사업성	미래 시장성·성장성 마케팅 능력	시장 전망, 경쟁 강도, 시장 지위, 제품경쟁력, 매출 성장성, 미래 수익성, 판매(영업)관리, 거래 안정성, <u>경기도 전략산업 여부*</u>	15점
기대효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일자리 창출 효과, 지역 내 산학연 협업 창출 지식재산권 취득, 수입대체(단가 인하)효과, <u>경기도 전략산업 여부*</u>	10점
윤리경영	윤리경영 및 사회적 책임 등	인권 및 고용 평등(성별, 장애인, 비정규직), 인력개발(교육훈련비용 및 체계), 사회공헌활동 등	5점
합 계			60점

※ 경기도 전략산업 : 글로벌 산업(반도체, 미래자동차 산업), 미래성장동력 산업(정보통신, 영상기술, 데이터, 바이오산업), 지식기반서비스 산업(ICT 산업)

⑤ 최종선정: 서류평가, 가산점, 발표평가 점수 합산 후 고득점순으로 47개사 내외 선정

- 공고일 기준 2년 내 (참고 3)의 11개 법률 중 **법 위반 내역**(확정 판결)이 있는 기업은 평가 총점(서류+발표+가산점의 20%) **감점 적용**하여 최종 점수를 산정함.
- 예비(후 순위) 기업 10개사 내외 규모로 선정하며 경기도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선정이 가능한 경우 또는 既선정기업 포기 시 예비기업을 추가 선정할 수 있음. (단 총점 60점 미만 기업은 제외함)
- 참여 시·군의 예산 범위 내 추가 선정이 가능할 경우 경기도 스타기업 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시·군의 Pre-star 육성사업으로 선정됨. (지원금 한도는 조정될 수 있으며, 총점 60점 미만 기업은 제외함.)

【참고 3】

법위반 적용법률 - 11개		
적용법률		내 용
I 공정	① 공정거래법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
	② 하도급법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原事業者)와 수급사업자(受給事業者)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 균형발전
	③ 표시광고법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광고를 할 때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
II 노동	④ 근로기준법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 기여
	⑤ 산업안전보건법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
III 환경	⑥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 기여
	⑦ 대기환경보전법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
	⑧ 소음진동관리법	공장·건설공사장·도로·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 소음·진동을 적정하게 관리
	⑨ 물환경보전법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 하천·호소(湖沼)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
IV 납세	⑩ 국세기본법	국세,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 과세(課稅),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
	⑪ 지방세기본법	

5 추진일정

사업 공고	▶ 경기도	'25. 02. 26.
↓		
신청·접수	▶ 온라인제출 사이트 서류 전산등록 (www.egbiz.or.kr)	~ '25. 03. 20.
↓		
평가 및 선정	▶ 서류평가 (필요 시 현장평가) ▶ 발표평가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발표평가 일정 개별안내	'25. 3~4월 중
↓		
선정기업 간담회	▶ 세부사업계획 작성 및 지원금 신청 방법 등 안내	'25. 4월 중
↓		
협약체결 및 세부사업계획서 제출	▶ 제출서류 : 공문, 사업계획서, 견적서 등	'25. 5월 중
↓		
사업계획 승인 및 지원금 선지급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선정기업	협약기간 내
↓		
과제수행 완료 및 완료보고서 제출	▶ 선정기업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25. 10. 31. 까지 수시제출(과제완료 시)
↓		
지원금 정산 및 점검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선정기업	'25 11. 까지 수시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6 문의처

문 의 처	전 화 번 호	이 메 일
경기경제과학진흥원 사업화지원팀 (홍혜은 차장, 양인영 과장, 김민지 대리)	031-259-6494, 6491, 6492	star@gbsa.or.kr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유지보수팀 ※ 이지비즈 온라인 접수 문의	031-259-6299	

※ 통화량이 많아 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E-mail로 문의하시는 것이 더욱 빠릅니다.

[중요]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 진흥원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2조와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 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 시)
-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